

예산총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9,794,442	15,293,833
일반회계	447,312,061	13,419,362
특별회계	62,482,381	1,874,471
공기업특별회계	36,902,154	1,107,065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3,789,933	713,698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3,112,221	393,367
기타특별회계	25,580,227	767,407
주택사업특별회계	44,641	1,33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316,319	39,490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6,432,253	192,968
자활기금특별회계	1,513,200	45,396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232,057	186,96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47,400	10,422
수질개선특별회계	6,126,530	183,796
도시개발특별회계	323,722	9,712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658,572	19,757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503,533	75,1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2,000	2,46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57,49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5억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